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0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현행화

(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나.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안 제11조)

다.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를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박상웅 (☎2133-6855)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

제20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물 :”을 각각 “종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기 :”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요재산 :”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별지 제4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35조 중 “것 이외”를 “사항 외”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 다. (생략) 라. <u>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u> 3. (생략)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u> 3. (현행과 같음)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u>별지 제1호서식</u>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u> ---. ③ ----- ----- ----- ----- -----.

현행	개정안
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u>종물</u>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u>종물</u> : 10년 3. <u>항공기</u> :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u>중요재산</u> : 5년 ④ (생략)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의</u>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의</u>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u>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u>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u>별지 제4호서식의</u>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u>종물</u>: ---- 2. ----- <u>종물</u>: --- 3. <u>항공기</u>: --- 4. ----- <u>중요재산</u>: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② ----- -----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 --- <u>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 2</u>----- ----- <u>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u> ----- -----.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법 제25조</u>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u><신설></u> 1. (생략) 2. <u>법 제32조제2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u>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u>	② ----- ----- <u>법 제36조의</u> <u>3</u>-----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u>필요한</u> ----- -----.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 ----- ----- ----- -----. 1. <u>법 제20조의2제2항</u> 전단에 따른 <u>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u>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u>법 제32조제3항</u> ----- -----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u>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항</u>

현행	개정안
<u>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u>	<u>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u>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3의2. (생략) 4. <u>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u>을 지급할 때 5. ~ 8. (생략) ② (생략)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u>법 제36조의3</u>----- -----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운영세칙) ----- -- <u>사항 외</u>----- <u>필요한</u>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박상웅 (☎2133-6855)